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03. Vol. 14, No. 1, 73-86

연구논문

여성가장가계의 재무구조 및 사회적 지원방안
- 편모가계 연구를 중심으로-

The Financial Structures of Women-Headed Households and Social Support
- Focusing on the Studies of Single Mother Households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김나연
신용회복지원위원회
박은정

Dept. of Consumer Studies and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Na Youn
Credit Recovering Supporting Service
Park, Eun-joung

〈목 차〉

- | | |
|-------------------|---------|
| I. 서 론 | IV. 결 론 |
| II. 연구자료 및 특성 | 참고문헌 |
| III. 연구자료 분석 및 고찰 |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ports about financial structures of the single mother households and women-headed households to examine their economic problems. As a result, we come to a conclusion that the single mother households and women-headed households have improper financial structures. For solving these problems, they need administrative economic support policies. Also, free education programs are very useful to

settle their financial structures.

Key words: women-headed household, single mother household

I. 서론

현대사회에서 편모가족은 가장 빨리 증가하는 가족 형태 중 하나이다.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가구주 가구는 2,653천가구로 총 14,312천가구(일반 가구) 중 1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2). 여기서 사별 50.5%와 이혼 11.6%가 편모가족에 해당되며, 미혼 여성가구주 가구(21.4%)중에도 편모가족이 있을 것이다. 김영희(1996)는 김정자(1985)의 ‘모자가족’에 대한 정의를 따라 편모가족을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유기, 별거, 혹은 미혼모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가족형태는 이혼율의 증가와 40대남성의 사망률 증가로 인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신화용·조병은, 1996).

편모들이 겪는 가장 심각한 스트레스는 경제적 스트레스이다(김정자, 1985, 1988; 김영희 1996; 정영숙·박충선, 1998). 경제적 빈곤에 대한 이유로 김영희(1996)는 편부모가 되기 이전부터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던 남성과는 달리 보수노동이나 기타 사회활동의 경험이 없고, 고용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하며, 교육수준이 낮아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보유하지 못한 여성 세대주는 비공식적이며 주변적인 노동에 종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지금까지 편모가족의 재무구조와 관련된 연구들은 전반적인 가계의 재무구조보다는 지출 등 특정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일정시기 동안에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편모가족의 재무구조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1985년부터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편모가족의 전반적인 재무구조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여성이 가장이 되는 여성가장가계 중 90%가 편모가족로 나타난 연구(홍승아·이미영, 1999)에 기초하여, 여성가장가계 또한 연구자료에 포함시켰다.

II. 연구자료 및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논문자료 및 각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김정자(1988)는 생활보호법상의 또는 그에 준하는 공적부조의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편모가족 중 총 2000개의 표본을 추출, 그 중 1920개를 분석하였다. 평균자녀수는 3.5명이며,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부양자녀수는 평균 3.03명이고, 전체 편모가족의 35.2%가 1명 이상의 미혼별거자녀를 갖는데, 별거자녀의 대부분(75.6%)은 취업때문에 별거하고 있었다.

문숙재·정순희(1995)의 경우, 편모가족과 양부모가족 두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편모의 평균 연령은 39.6세, 양부모가족의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7.7세이었으며, 편모가족의 평균 가족수는 2.7명, 양부모 가족의 경우는 3.9명이었다.

김영희의 연구(1996)는 대전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자녀를 둔 빈곤층 편모 16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하였는데, 대상자의 연령은 35세에서 49세까지의 분포를 보였다. 자녀수는 한 자녀 또는 두 자녀가 6명이었고, 그 나머지는 두 자녀 초과이었다.

정영숙·박충선(1998)은 대구에 거주하는 미취학·초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교육수준은 편부의 경우 중졸이하가 59.4%,

여성가장가계의 재무구조 및 사회적 지원방안 - 편모가계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	연구대상	표본가계수	평균 연령	학력
김정자 (1985)	1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편부모 가족	서울 편부: 359가구 편모: 1,096가구 농촌 편부: 536가구 편모: 1,007가구	편모 46.9세	
김정자 (1988)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편모	1920가구	편모 44.4세	무학: 30.9% 국졸이하: 53.3%
문숙재 · 정순희 (1995)	18세 이하의 자녀가 최소한 1명 있고, 부모와 친자녀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머니의 연령이 65세 미만인 가족	편 모가족 88부 양부모가족 280부	편모 39.6세	편모 교육수준 중졸이하: 37.7% 고졸이하: 48.2% 대학이상: 14.1%
김영희 (1996)	초 · 중생 자녀를 둔 빈곤층 편모 (대전거주)	16명	40.8세	무학 3명/국졸 5명 중졸 5명/고졸 3명
신화용 · 조병은 (1996)	자녀가 중고등학생인 편모	275부	42.3세	중 · 고교: 65.6% 대학이상: 13.0%
정현숙 · 서동인 (1997)	편모가족의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	275부	42.3세	중졸이상: 78.6%
정영숙 · 박충선 (1998)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대구거주)	총 397가구 편 부 : 35가구 편 모 : 124가구 양부모 : 238가구		편모가족 중졸이하 : 49.6% 고 졸 : 43.1% 대학이상 : 7.3%
이윤금 · 양세정 (1999)	가구소비실태조사 기초자료 (1996)	양부모 8,512가구 편 모 151가구	편모 40.9세	편모가계 중졸 : 66.2% 대학이상 : 1.3%
성정현 (2000)	별거하거나 이혼한 여성 (질적면접)	104명	30~40 : 85%	중졸 : 14.3% 고졸 : 52.7% 대학 : 11.6%
이성립 · 김민정 (2001)	대우가구패널조사자료(1997)	2,524 가계	60세 미만: 50.9세 60세 이상: 69.3세	60세 미만: 고교이하 : 85.5% 60세 이상: 고교이하 : 96.2%
옥선화, 성미애, 허정원 (2001)	빈곤층 여성가장	359부	40.6세	고졸 : 58.7% 중졸 : 23.8%
이재림 · 옥선화 (2001)	배우자와 사별, 이혼, 별거했거나 배우자의 무직으로 인해 가정의 주된 생계 부양자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첫 자녀가 초 · 중 · 고에 재학중인 여성	356명	30-39세: 41.5% 40-49세: 55.6% 50-59세: 2.9%	

고졸이 34.4%, 대졸이상이 6.3%로 나타났으며, 편모가족의 경우는 중졸이하가 49.6%, 고졸이 43.1%, 대졸이상이 7.3%이었다. 양부모가족의 경우는 중졸이하가 25.4%, 고졸이 55.0%, 대졸이상이 19.6%이었다.

이윤금과 양세정(1999)은 1996년 가구소비실태 조사의 기초자료를 사용하여 8,663가구 중 양부모 가계 8,512가구, 편모가계는 151가구를 분석하였다. 양부모가계의 가구주 평균연령은 39.0세이고, 편모가계는 40.9세이었다. 가구주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양부모가계는 고졸이 44.2%로 가장 많은 반면, 편모가계는 중졸이 6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부모가계의 경우 대졸학력의 가구주가 21.3%로 편모가계의 1.3%와 현격한 차 이를 보였다. 양부모가계의 평균가족원수는 4.1명으로 2.5명인 편모가계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성립·김민정(2001)의 연구는 1997년 대우가구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전체 표본 2,638 가계 중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여성가구주가구와 남성가구주가구를 포함하여 소득과 자산지표에 결측치가 있는 자료를 제외한 2,524 가계로 구성되었고 이 가운데 60세 미만 여성가구주 가구는 3%, 60세 이상 여성가구주 가구는 5%를 차지하여 표본에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평균 가구원수는 60세 미만 여성가구주는 2.5명이고, 60세 이상 여성 가구주는 1.7명이었다.

옥선화, 성미애, 허정원(2001)은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첫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중이며, 단순노무직, 판매·영업·서비스직, 단순기능직, 수입이 불규칙한 부업, 공공근로 등에 종사하거나 3개월 이내로 구직중인 빈곤층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적인 연구자료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편모의 연령은 40대이었고, 국졸과 중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학력수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직업 역시 전문직 보다는 단순노무직, 농림 수산업, 서비스직,

단순기능직 등 수입이 불규칙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로서 편모가계는 일반 가계보다 열악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유가 인구학적 특성에서 비롯되었으리라 사료된다.

III. 연구자료 분석 및 고찰

1. 편모가계·여성가장 가계의 재무구조

1) 소득구조

김정자는 1985년에 처음으로 편부모가족의 소득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여기서 편모가족에 대하여 연구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수준 변화는 다음과 같다.

편모가족의 소득을 살펴본 김정자의 연구(1985)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편모가족 중 15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구는 50.2%, 15~40만원의 소득을 가진 가구는 44.1%, 4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구는 5.7%이었고, 농촌에서는 각각 93.6%, 6.0%, 0.4%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농촌에 거주하는 편모가족의 대부분이 조사당시 매우 빈곤한 상태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편모가족들의 수입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과 농촌에서 주로 본인의 수입에 의존하는 가구가 각각 66.8%, 72.8%로 가장 높았고, 자녀의 수입에 의존하는 가구는 18.9%, 17.7%이었다. 연금, 지원금, 생보자 생계비 보조는 2.7%, 3.6%로 나타났다.

또한 1988년도에 발표된 김정자의 연구를 살펴보면, 저소득층 편모가족의 월평균소득은 167,390 원(시부:192,060원, 군부:118,420원), 1인당 가구소득은 48,550원으로 시부 편모가구의 소득은 1986년도 도시 근로자가구의 소득 10분위 중 하위 20%의 월소득(145,789원)과 비슷한 수준이며 군부 편모가구의 월소득은 일반 농가(499,584원)의 23.7%에 그쳤다. 여기서, 대상 가구의 73.5%가 2개이상의 소득원에 의존하였으며, 이러한 가구의 소득이 단일 원천의 가구보다 소득이 높았다. 가

<표 1-1> 편모·여성가장가계/양부모가계의 월평균소득

(빈도분포)

	편모	양부모		편모	양부모
1985 김정자, 편모	-서울 ~15만원: 50.2% 15~40만 : 44.1% 40만원~ : 5.7% -농촌 ~15만원: 93.6% 15~40만 : 6.0% 40만원~ : 0.4%		1996 신화용·조병은, 편모	60만원 이하 : 26.0% 61-90만원 : 25.3% 91-150만원 : 32.1% 150만원 이상: 16.6%	
	1998 정영숙·박충선, 편모			60만원 이하: 55.0% 61-100만원 : 26.7% 100만원 이상: 18.3%	
1997 정현숙·서동인, 편모	30만원 이하 : 2.6% 31-60만원 : 23.4% 61-90만원 : 25.3% 91-120만원 : 19.4% 121-150만원 : 12.8% 151-180만원 : 7.0% 181-210만원 : 4.8% 210만원 이상: 4.8%		2000 성정현, 여성가장	60만원 이하: 13.4% 61-100만원: 13.9% 100만원 이상: 72.7%	
	2001 이재림·옥선희, 여성가장			50만원 미만 : 52.0% 51-99만원 : 30.4% 100-149만원 : 10.8% 150만원 이상: 6.8%	
	50만원 이하 : 43.6% 51-75만원 : 30.1% 76-100만원 : 21.2% 100만원 이상: 5.1%				

<표 1-2> 편모·여성가장가계/양부모가계의 월평균소득

(평균)

	편 모	양부모		편 모	양부모
1988 김정자, 편모	월평균 167,390원 (시부:192,060원) (군부:118,420원)		1999 이윤금·양세정, 편모	월평균 929,979원	월평균 1,976,192원
1995 문숙재·정순희, 편모	월평균 총 가족소득 1,123,765원	월평균 총 가족소득 1,930,928원	2001 옥선희 외, 여성가장	월평균 630,000원	
			2001 이성림·김민정, 여성가장	월평균 1,596,000원	

장 일반적인 유형은 '편모의 소득과 기타소득(이전소득 포함)'으로 51.8%가 이에 해당된다. 소득 원천별 가구소득의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편모가정은 가주구 소득이 66.6%, 가구원소득이 20.7%, 기타소득이 12.7%, 이전소득이 6.7%로 나타나, 1986년도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원천별 구성비(가구주소득 79.2%, 가구원소득 10.5%, 기타소득 10.3%, 이전소득 1.7%)와 비교했을 때 가구주소

득 비율이 낮았다.

1995년에 실시된 문숙재·정순희의 연구를 보면 편모가족의 월평균 총가족소득은 1,123,765원으로 양부모가족의 1,930,928원의 58%에 불과하였다. 편모 중 79.5%가 취업한 상태였는데, 이 중 시간제가 5.7%, 전일제가 73.8%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양부모가족의 유형 중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는 53%이었다.

신화용과 조병은의 1996년도 연구에서 편모가계의 월평균소득은 25.3%가 61만원에서 90만원 사이의 소득을 갖고 있으며, 60만원 이하인 경우도 26%로 나타났다. 1995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소득인 140만원과 비교할 때(통계청, 1995) 편모가족의 수입은 매우 낮았다. 그러나 16.6%는 소득이 월평균 150만원 이상으로 빈곤가족에 편중되었던 선행연구와는 달리 편모의 수입이 보다 다양하게 나타났다.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자신의 생활수준을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53%, 못사는 편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는 36%로 대부분 자신들의 생활수준을 중 또는 중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현숙·서동인(1997)의 연구에서는 편모가족의 소득이 30만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2.6%, 31만원~60만원인 경우가 23.4%, 61만원~90만원이 25.3%, 91만원~120만원이 19.4%, 121만원~150만원이 12.8%, 151만원~180만원이 7.0%, 181만원~210만원 사이와 210만원 이상이 각각 4.8%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은 10명 중 8명이 취업하고 있으며 편모의 학력이 선행연구에 비해 높은데도 불구하고 서비스·판매직(56.8%), 단순 노무직(15.9%), 생산직(15%) 등의 비숙련직에 대부분 종사하고 있었다.

정영숙·박충선(1998)의 연구에서는 소득계층을 60만원 이하일 때 저소득층, 61만원에서 99만원까지를 중소득층, 100만원 이상을 고소득층으로 분류하였는데, 편모가족은 고소득층이 18.3%로 가장 낮은 반면 저소득층은 55.0%로 가장 높아, 편모가족이 저소득층에 많이 몰려 있는 결과가 나왔다. 직업은 판매·서비스직이 20.9%로 가장 높았다.

이윤금과 양세정(1999)의 연구는 양부모가계와 편모가계의 가계소득구조의 차이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가계소득은 양부모가계가 월평균 1,976,192원, 편모가계는 929,979원으로 양부모가계가 편모가계에 비해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모의 경우 직업은 노무직 종사

자가 51.7%, 서비스직이 39.7%로 이들 두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90%를 상회하였다. 소득원천별로 살펴보면, 경상소득 중(총가계소득에서 비경상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편모가계가 82.4%로 양부모가계의 91.0%에 비해 낮았고, 가구주소득의 경우 편모가계가 82.2%로 양부모가계(76.1%)에 비해 높았다. 양부모가계의 가구주소득은 월평균 1,422,302원으로 편모가계의 717,112원에 비해 월등히 많았는데,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편모의 대다수가 저임금 직종인 서비스직과 노무직에 종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편모가계는 또한 사회보장금과 친지들로부터의 생활비보조를 포함한 이전소득(10.0%), 재산소득(7.1%)의 비중이 양부모가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소득 5분위에 따른 분포를 보면, 양부모가계의 경우 소득 1분위부터 소득 5분위까지 비슷한 비율(약 20%)로 분포되어 있었으나, 편모가계의 경우는 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계가 전체 가계의 82.8%이었다. 편모가계의 일인당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 5분위에 따른 분포를 다시 계산한 결과 소득 1분위 43.7%, 2분위 18.5%, 3분위 13.9%, 4분위 13.9%, 5분위 9.9%로 여전히 저소득층에 편모가계가 대다수 분포되어 있었다.

성정현(2000)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월평균소득을 알아본 결과 50만원 미만이 52%, 51-99만원이 30.4%, 100-149만원이 1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이 경제적 비용 충당방법은 본인의 소득, 가족소득, 친·인척의 보조, 생계보조비 등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0%가 직업이 있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50%는 무직이었다. 직업이 있는 경우 고용형태는 파트타임이 56.3%로 가장 많았고, 직업종류에서도 파트타임이나 판매직인 경우가 각각 25.4%, 19.4%이었다. 여기서 성정현(2000)은 조사당시 직업이 있는 응답자 중 40%는 이혼 전에도 직업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이혼 당시 직업이 있었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직업에 종사하고 나머지 이

흔 당시 무직이었던 사람들 중 일부가 직업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때 취업증가율이 단지 10%정도에 머무른 것은 이혼여성들의 취업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2001년 IMF이후 여성가장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옥선화 등(2001)의 연구에서, 여성가장 가족의 월수입은 평균 63만원으로 전체 근로자의 평균 월수입(2000년 2,008,500원)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빈곤층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적인 여성가구주보다 매우 낮은 소득수준이라 하겠다. 연구결과 빈곤 여성 가장의 84.9%가 '본인의 수입'으로 생활하며, 부차적으로 25.3%는 '친정 쪽의 도움', 22.8%는 '생활보조 수당'을 받는다고 밝혔다. 직업은 판매·영업·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22.4%, 수입이 불규칙한 부업을 하는 경우가 22.2%,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16.3%,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7.3%, 단순기능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6.4%,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8.5%, 그리고 현재 구직중이거나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경우가 10.5% 이었다.

이재림·옥선화(2001)의 연구에서는 월소득이 50만원 이하인 경우가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1-75만원이 30.1%, 76-100만원이 21.2%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단순 노무직(17.4%), 판매·영업·서비스직(22.9%), 단순기능직(13.8%), 수입이 불규칙한 부업 및 공공근로에 종사하고 있거나 휴직 후 3개월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도에 발표한 이성립·김민정의 연구에서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가계소득과 가계지출을 남성가구주 가구와 비교했는데, 60세 미만 여성 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9만6천원으로 같은 연령대의 남성가구주 가구소득의 66.5%에 불과하였다. 60세 이상 여성가구주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이보다 더 낮아 66만4천원으로 같은 연령대 남성가구주 가구 소득의 절반이었다. 60세 미만 여성 가구주의 직업은 봉급생활자 26.3%, 자영업 19.7%, 농림수산업 10.5%, 비정규직종사자

21.1%로 나타났고, 60세 이상 여성 가구주는 봉급생활자가 3.0%, 자영업자가 4.5%, 농림수산업이 6.8%, 비정규직종사자가 13.5%로, 60세 미만 여성 가구주와 60세 이상 여성 가구주의 직업상태가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편모가계의 소득구조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편모가계가 양부모 가계에 비해 월등히 낮은 소득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편모가계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할 것임을 실제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라 하겠다. 한편 신화용·조병은(1996)의 연구 등에서는 월평균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계가 약 2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편모가계가 빈곤가족에 편중되었던 선행연구와는 다른 경향을 보인다. 이는 과거에 비해 높아진 여성취업률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되며 앞으로의 연구에서 보다 다양한 경제수준을 가진 편모가계가 연구대상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2) 지출구조

가구의 지출에 대한 김정자(1988)의 연구를 보면, 편모가구의 월소득은 167,395원이나 가계지출은 176,034원으로, 총 소득이 총 지출의 95.1%만 충당하는 적자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가구의 52.5%가 적자가구이었다. 소비지출증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엥겔계수'가 37.7%로 가장 높고, 교육비(31.6%), 주거비(1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보호유형별로는 거액보호가구보다 자활보호와 의료보호가구에서 총가계지출액과 주거비의 비율이 높아지나, 엔겔계수는 낮아졌으며, 교육비는 모든 생활보호유형에서 30%를 넘었다.

문숙재와 정순희는 1995년에 편모가족과 양부모가족간의 소비지출 패턴을 비교하면서 10개의 소비지출범주 각각이 총소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월평균예산할당(지출)비율을 측정하였다. 이지출범주는 가정내 식료품, 외식, 주거, 교육, 의복 및 신발, 교통통신, 광열 및 수도, 보건의료,

교양오락, 그리고 잡비이다. 연구결과 편모가족의 총소비지출액은 811,825원, 양부모가족의 총소비지출액은 1,302,797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편모가족은 총소비지출의 27.4%, 양부모가족은 24.3%를 가정내 식료품비에 할당했는데, 가정내 식료품비의 앵겔계수를 통해 볼 때 편모가족의 소비생활수준이 양부모가족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편모가족의 경우 가정내 식료품비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비(14.9%)와 교육비(13.8%)인데, 이는 양부모 가족의 주거비(7.8%), 교육비(8.9%)의 약 1.9배에 이르고 있다. 편모가족은 외식(3.5%), 교통통신(9.0%), 교양오락(1.9%)에 양부모 가족보다 유의하게 더 적은 비중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항목에는 가족집단간 할당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편모가정의 경우 의복 및 신발에 6.4%, 광열수도에 4.4%, 보건의료에 3.1%, 잡비에 15.6%를 할애하고 있었다.

편모와 양부모가족의 10개 지출비목에 대한 소득탄력성을 비교한 결과, 외식, 교육, 의복 및 신발, 가정내 식료품, 교양오락비목의 경우 가족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문숙재·정순희, 1995). 즉 편모가족의 외식, 교육, 의복 및 신발 지출의 소득탄력성은 각각 1.27, 1.08, 1.18로 양부모가족의 0.08, 0.61, 0.86보다 훨씬 높았고, 가정내 식료품과 교양오락의 경우는 편모가족에서 각각 0.56과 0.72로 양부모가족의 0.83과 0.98보다 낮았다.

이윤금과 양세정(1999)의 양부모가계와 편모가계의 비목별 소비지출규모 비교결과를 보면 교육비를 제외한 모든 지출비목에 대하여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대부분의 비목에서 양부모가계가 편모가계보다 높은 지출규모를 보였으며, 특히 외식, 보건의료, 기타 소비지출 등에서 차이가 커졌다. 그러나 주거비에 있어서는 편모가계의 지출규모가 양부모가계보다 높게 나타났다. 양부모와 편모가계의 지출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식료품비는 가구원 1인당

식료품비 지출규모로 환산할 때 양부모가계는 62,165원, 편모가계는 58,923원을 지출하고 있어 두 집단간에 커다란 차이가 없었다. 반면 외식비의 경우는 두 집단간에 가장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비목으로, 편모가계의 외식비지출은 가계소득의 제약 등으로 인해 양부모가계에 비해 현격히 적었다. 주거비 지출은 편모가계가 양부모가계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편모가계의 주거상태가 월세인 경우가 양부모가계에 비해 월등히 많기 때문일 것이며(각기 16.8%, 37.7%), 반면 광열·수도비의 경우 양부모가계가 편모가계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은 양부모가계의 가구원 수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보건·의료비의 경우는 양부모가계가 편모가계에 비해 월평균 36,540원이 많았다. 교육비지출규모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일인당 교육비의 경우 편모가계는 53,544원으로 양부모가계의 38,101원에 비해 40.5%가 많았다. 그 외 교양·오락비, 교통·통신, 기타소비지출에서는 양부모가계에서 현격히 높았다. 관혼상제 및 경조비, 이미용비를 포함하는 기타소비지출의 경우 두 집단간의 지출규모의 차이가 가장 커졌다.

양부모와 편모가계의 소비지출 비목별 구성비를 보면, 양부모가계와 비교할 때 편모가계는 필수재적 성격이 강한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비 등에서 지출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피복·신발, 교육 등 자녀양육과 관련한 지출항목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편모가계의 교육비 지출구성비는 식료품비 다음으로 높았으며, 이를 집단의 교육비 지출구성비(16.5%)는 양부모가계(11.6%)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다. 가구집기·가사용품의 경우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외식, 교양·오락, 교통·통신비와 기타 소비지출의 경우 양부모가계의 지출구성비가 편모가계 보다 높았다. 또한 가족의 건강과 관련된 보건·의료비도 양부모가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출구성비를 나타냈다.

이성림과 김민정의 연구(2001)에서 균등화지수로 조정한 환산가계소득과 환산가계지출을 살펴보면, 여성가구주 가구의 환산소득과 지출은 동일한 연령대의 남성가구주 가구의 환산소득과 지출보다 여전히 작지만 가계소득과 지출로 비교할 때보다 차이가 많이 줄었다(60세 미만 여성가구주의 환산 가계 소득은 216만원, 환산 가계 지출은 158만원). 60세 미만 가구에서 여성가구주 가구의 환산가계소득과 지출은 평균적으로 남성가구주 가구의 약 88% 수준으로 나타내고 60세 이상 가구에서 여성가구주 가구에서는 평균적으로 남성가구주 가구의 약 70%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연구자들은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적 복지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지출구조를 비목별로 자세히 분석한 문숙재·정순희(1995)의 연구와 이윤금·양세정(1999)의 연구를 보면 <표 2>와 같다.

이처럼 편모가계의 경우 양부모가계와 여러 가지 다른 소비지출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식비가 차지하는 영계수가 높다. 또한 주거비에서 편모가계의 지출규모가 양부모가계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편모가계의 주거상태가 월세인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월평균 생활비는 편모가계가 양부모가계에 비해 낮으며, 소비지출 비목별 구성비를 보면 편모가계는 필수재적 성격이 강한 지출비목인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비 등에서 지출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소비지출 구조의 특성들은 편모가계의 소비생활수준이 그만큼 크게 낙후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3) 자산구조(저축, 부동산 및 부채)

저소득층 편모가정의 저축과 부채에 대한 김정자(1988)의 연구에서 대상 가구중 저축하고 있는 비율은 23.2%이며, 저축가구의 월평균 저축액은 시부 46,828원, 군부 25,409원인데 주로 신협·농협·우체국등(36.3%)·은행(29.4%)을 이용하고, 사채는 0.7%로 드물었다. 부채가 있는 가구는 전체의 67.6%에 이르는데 생활비로 인한 경우가 36.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녀 교육비

<표 2> 편모가계/양부모가계의 지출구조

	문숙재·정순희(1995) -편모/양부모 예산할당(비율/월지출액)		이윤금·양세정(1999) -편모/양부모 예산할당(비율/1인당월지출액)	
	편모 (N=88)	양부모 (N=280)	편모(N=151)	양부모(N=8,512)
총소비지출	100.0 (811,825)	100.0 (1302,797)	100.0 (324,482)	100.0 (325,047)
가정내식료품	27.4 (222,440)	24.3 (316,580)	21.8 (58,924)	21.6 (62,165)
외식	3.5 (28,413)	4.6 (59,929)	3.9 (12,201)	7.8 (25,383)
주거	14.9 (120,961)	7.8 (101,618)	6.7 (10,683)	3.2 (10,683)
교육	13.8 (112,032)	8.9 (115,949)	16.5 (53,544)	16.5 (38,101)
의복 및 신발	6.4 (51,957)	7.1 (92,499)	9.5 (30,990)	8.1 (27,688)
교통통신	9.0 (73,064)	13.6 (177,180)	9.3 (38,089)	11.2 (40,485)
광열수도	4.4 (35,720)	3.7 (48,203)	9.1 (23,562)	6.0 (16,489)
보건의료	3.1 (25,167)	3.9 (50,809)	3.2 (10,112)	4.8 (15,078)
교양오락	1.9 (15,425)	2.6 (33,873)	3.5 (13,617)	4.0 (14,626)
잡비	15.6 (126,646)	23.5 (306,157)	12.7 (42,332)	17.8 (60,393)

와 가족 의료비가 각각 18.4%, 장사밀천·영농자금을 위한 빚이 12.5%이었다. 또 주택구입이나 수리를 위한 경우도 8.3%로 나타났다. 부채가 있는 가구의 평균부채액은 149,500원이었다. 저축과는 대조적으로 대부분(73.4%)이 친구·이웃·친척 등으로부터 빚을 얻었고 제도화된 대출기관(은행 2.0%, 비은행금융기관 11.5%, 동희·구청 2.5%)으로부터 부채를 얻는 비율은 낮았다. 부채에 대한 장래계획을 살펴보면, 70.1%가 어떻게 해서라도 스스로 갚겠다고 한 반면, 20.8%는 자녀가 커서 갚기를 기대했고, 나머지 9.1%는 '별 다른 방도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윤금·양세정(1999년)의 연구 결과를 보면 편모집단과 양부모 집단 모두 저축성예금에 가장 많은 돈을 예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요구불예금이나 비은행권저금에서는 양부모가계가 편모가계에 비해 저금액수가 높았고, 위험대비를 위한 보험에서도 양부모가계가 편모가계에 비해 총 1,293,405원정도 더 많았다. 한편 계불입금, 유가증권, 빌려준 돈 명목의 저축에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총저축보유액은 양부모가계 16,846,853원, 편모가계 10,997,887원으로 편모가계가 5,848,966원이 적었다. 전반적으로 양부모

가계는 편모가계에 비해 다양한 형태의 저축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었다.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에서의 부채액은 양부모가계가 은행권 및 비은행권 부채가 모두 많아서 각각 4,093,334원과 703,683원이었으며, 편모가계는 각각 1,334,172원과 33,113원이었다. 보험, 계탄 돈, 빌린 돈과 관련된 부채에 있어서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양부모 가계가 563,402원으로 편모가계의 110,443원 보다 매우 높았다. 따라서 총부채잔액은 양부모가계가 6,972,017원 편모가계는 2,541,570원이었다.

성정현(2000)의 연구에서는 부동산과 현금 및 적금 등을 합산한 총재산을 알아본 결과 500만원 이하가 46.1%, 500-1000만원 이하가 21%, 1000-1500만원이 3%, 그리고 1500-2000만원 이하가 13%로 나타났다. 즉 총재산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76.5%에 이르러 여성가장가계의 상당수가 빈곤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MF이후 여성가장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옥선화등(2001)의 연구에서, 동산보유수준은 63.1%가 '없다'고 밝혔으며, 평균 보유 동산액은 446만원이었다. 부동산의 경우, 16.7%가 '없다'고 밝혔고,

<표 3> 편모·여성가장가계의 자산구조

	저축	부채		저축	부채
1988 김정자, 편모	시부 : 46,828원 군부 : 25,409원	149,500원	2001 옥선화 외, 여성가장	4,460,000원	9,400,000원
1999 이윤금·양세정, 편모	양부모 총저축액: 16,846,853원 편모 총저축액: 10,997,887원	양부모 총부채액: 6,972,017원 편모 총부채액: 2,541,570원	2001 이성립·김민정, 여성가장	-60세 미만 여성 가구주 금융자산 : 614만원 주거 : 4,125만원 부동산 : 1376만원 -60세 이상 여성 가구주 금융자산 : 269만원 주거 : 4,004만원 부동산 : 379만원	-60세 미만 여성 가구주: 551만원 -60세 이상 여성 가구주: 145만원
2000 성정현, 별거·이혼여성	총재산 (현금+적금+부동산) 500만원이하:46.1% 500-1000만원:21% 1000-1500만원:3%, 1500-2000만원:13%				

평균 보유 부동산액은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하여 1,994만원이었다. 부채수준은 57.7%가 '없다'고 밝혔으나 1억이상의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1.8%를 차지하였고, 평균 부채액은 940만원이었다.

이성림·김민정(2001)의 연구결과, 여성가구주 가구는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하여 소유한 자산이 적고 특히 60세 이상 여성가구주 가구는 순자산이 약 4,518만원으로서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형태의 공통점은 순자산에서 현재 거주주택(전세, 월세 보증금포함) 가치의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가구주 가구에서 그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평균 보유 순자산액이 가장 낮은 60세 이상 노인여성가구주 가구의 순자산에서 주택가치가 89%나 차지한 반면 금융자산의 축적 수준(평균 269만원, 순자산의 6%)은 매우 낮았다. 60세 이상 여성가구주가 소득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현재의 지출수준을 유지한다면 현재 보유중인 금융자산으로 평균 3개월 정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세 미만 여성가구주 가구에서도 금융자산/월소비지출액 비가 평균 5.7개월이어서 남성가구주 가구의 8.3개월에 비하여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 편모가계·여성가장가계의 미래 재무구조 기대 및 효과적인 정부지원 방안

1) 편모·여성가장의 미래 재무구조 기대

김정자(1988)의 연구에서 저소득층 편모의 장래 생활전망을 보면 39.5%가 미래에 대하여 낙관적 견해를, 38.1%는 비관적 견해를 밝혔다. 낙관하는 이유는 '자녀취업'이 73.0%인데 반해 '본인 취업/전직'은 9.4%로 편모의 장래생활에 대한 희망이 자녀에게 걸려 있음을 보여주었다. 편모의 노후대책으로는 자녀에게 자신의 노후를 의탁할 의사를 나타낸 경우가 35.8%(아들 34.4%, 딸 1.4%)로 가장 높고 '혼자 살겠다' 30.3%, '아직

노후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적 없다' 21.1%, '자녀 의사에 따르겠다' 12.8% 순이었다.

신화용·조병운의 연구(1996)에서 미래의 경제 상황에 대해 10명중 7명의 편모가 자신들의 형편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10명중 1명만 해당되었다. 여성 실직가장에 대한 차성란(1999)의 연구에서도 이들의 가계경제상태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었으나 앞으로 3, 4년후의 가계경제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또는 조금 나아질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7.2%로 나타나,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렇게 미래 경제사정에 대해 낙관적인 연구결과는 이후 연구(옥선화등, 2001)의 연구에서도 동일하여,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서 59.9%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아질 것이다'와 '나아질 것이다'에 응답하였다.

위와 같은 결과는 대다수 편모·여성가장이 가계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성정현(2000)의 연구에서 미래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현실에 하루하루 충실히 사는 것 정도'라는 응답이 47.5%, '전혀없다'가 30.5%, '저축이나 보험을 들고 있는 경우'는 각각 10.2%, 5.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가계가 현재도 빈곤하지만 미래에도 빈곤한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한 편모·여성가장 가계에 대한 효과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2) 편모가계·여성가장 가계의 정부지원 실태 및 효과적인 지원 방안

김정자(1988)는 편모가족이 받을 수 있는 조직적 지원에 대해 정부차원과 비정부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에 따르면 정부차원에서는 1) 사회복지 서비스부문에서 모자보호시설과 기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2) 공적부조의 측면에서 생활보호사업과 원호사업에 의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3) 사회보험 부문에서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배우자가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사인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시 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공적부조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특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층을 위해 국가에 의해 마련되는 최저생활보호이다.

편모가족의 소득별 생활보호 유형을 보면(김정자, 1988), 거액보호대상가구 중 42.0%만이 적합하게 선정되었으며, 거액보호 대상가구에 포함되어야 하나 자활대상인 가구도 20.8%에 이르렀다. 의료부조인 경우 비자격자의 비율이 가장 낮지만, 45.8%는 거액이나 자활보호 같은 좀더 높은 보호수준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다. 편모가족이 가장 광범위하게 받은 공적부조인 교육 보호는 77.9%가 수혜경험이 있고, 97.2%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거액보호자만 받을 수 있는 현금 현물의 생계보호는 24.2%만이 만족을 표시하였다.

김영희는 그의 연구(1996)에서 요보호 편모세대는 1996년 당시 생활보호법에 의해 생계비, 의료비, 자녀교육비, 장의비, 생업자금 등을 제공받고, 모자복지법에 의해 자녀교육비(생활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양육비 등을 제공받는다고 하였다. 1996년말 현재 저소득층 편모가족을 위한 지원(변화순, 1997)을 보면, 전체 편모가정의 85.6%가 지원받고 있으며, 14.4%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

정현숙·서동인(1997)에 따르면, 저소득편모가정에 대해 기본생계보장과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모자보호시설을 설치, 수용보호하고 있으며 보호기간은 3년 이내로 시설수용 저소득 모자가정에게는 생계비, 교육비, 보육료지원 및 시설퇴소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였다.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를 지원, 1996년 상반기까지 20,506세대가 지원을 받았다. 저소득 모자가정의 조기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도모를 위해 생활등급 7등급이하(4인 가족 기준 월소득 972,000원 미만) 모자가정에게 세대당 1,000만원 이내의 생업자금을 장기저리로 응자지원하였으며 1996년도에 3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300세대에 지원하였다. 그러나 정현숙·서동인(1997)은 기본적으로 현재(1996)의 수준으로는 수혜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확대실시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즉, 경제적 지원,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보조, 편부모수당 지급, 직업훈련 기회 제공, 임대주택의 입주 우선 순위 안배를 제안하며, 이는 예산 확보가 수반되는 정책이므로 공적부조 확대 실시를 위한 예산의 확보,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무엇보다도 임대주택의 입주 우선권확대 실시는 이혼자의 기본생활 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라고 하였다(정현숙·서동인, 1997).

차성란(1999)은 여성가장 실직자가정에 대한 공식적인 사회적 지원망 하나로서 대상 가정의 보호유형을 조사하였는데, 정부보호를 받지 않는 가정 38.1%, 모자보호 유형 33.0%, 자활보호유형 20.6%였고, 비공식적 지원망은 친정의 경우만 경제적 지원(44.4%)의 지원이 높았다.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지원에 대해 91.3%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 대부분의 조사대상 가정에서 가정생활 유지를 위한 금전적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 학자금지원(82.2%), 의류비 지원(81.4%), 주택자금지원(81.3%)등이 모두 높은 응답률을 보여 경제적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성정현(2000)의 이혼여성 자립방안에 관한 연구를 보면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이혼후 소득의 감소를 경험하는데 이들이 빈곤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적 부양형태의 재산분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본인 명의의 재산을 갖고 있는 여성의 비율은 매우 낮으며, 본인 명의가 있는 경우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받는다 해도 적절한 수준이라

할 수 없으며 보다 큰 문제는 재산분할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혼후 생활보장을 위해서는 부부간 재산제도에 대한 전면 검토와 함께 빈곤해진 여성가장 가계에 대한 사회보장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빈곤 여성가장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책으로 47.7%가 ‘본인의 안정적인 취업’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정부의 복지지원(21.1%)’을 들었다. 특히 경제력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이만 들어가는 것에 대해 높은 불안감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이들이 경험하는 직업역할 비용은 이들의 불안정한 직종과 직업지위에서 오는 비용들이었다. 또한 빈곤 여성가장의 경우 현재의 생활수준이 낙후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생활대책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육선희 외, 2001).

IV. 결 론

본 연구는 편모가계를 중심으로 여성가장가계의 경제구조를 소득구조, 지출구조, 저축과 부동산, 부채를 포함하는 자산구조에 대해 연구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편모가계·여성가장가계는 소득구조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근로소득보다는 재산소득과 친지 및 정부의 보조로 인한 이전소득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편모·여성가장의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노동시장에서의 가치 또한 그 만큼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구조를 가지는 가계에 대한 연구들도 발견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편모가계의 소득구조는 대부분 빈곤상태에 있는 기존의 상황에서 벗어나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둘째, 소비지출구조에서는 특히 식품비와 주거비, 교육비 등 필수 지출영역의 지출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편모·여성가장가계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비 지출은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편모·여성가장가계의 보건의료에 관한 정부의 정책적인 보조가 필요할 것임을 시사해준다.

셋째, 편모·여성가장가계의 경우 저축관련 비목과 부채관련 비목에서 양부모가계보다 총액수가 낮고, 자산구조면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자산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이를 통해 편모·여성가장가계는 저축, 부채관련 자산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더 나아가 노후준비나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여유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편모가계는 중년여성이 대부분으로 대개 고졸이하의 학력을 소유하고, 건강상의 문제가 많으며,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인구학적 특성에서 비롯된 문제때문에 대부분 열악한 경제 구조로 인한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편모가계가 되기 전에 여성은 주로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을 담당하고 경제활동참여에는 관여하지 않다가 편모가계가 되고 나서 생계유지를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할 때 노동시장에서 이들의 노동성이 낮게 평가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편모·여성가장가계는 대부분 경제적 지원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편모가정에 대해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만을 제공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다 나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무상으로 교육을 지원하면서 이 기간동안 생활비를 제공하는 방법은 편모가정과 여성가장가계의 낮은 소득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육기간 동안에만 제한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은 대상 가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경제적 지원이 여성가장 가계의 증가를 오히려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이러한 가계가 겪는 사회·심리적 문제들도 심각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편모·여성가장가계의 경제적 어

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회·심리적인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편모·여성가장가족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경애(1999). 혼들리는 모성, 지속되는 모성역할 : 저소득층 모자가정의 여성가장, 한국여성학. 15(2). 87-117.
- 김영희(1996).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원에 관한 질적 내용분석. 안성산업대학논문집. 28. 245-252.
- 김정자(1985). 편부모가족의 지원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여성연구. 3(1). 30-78.
- 김정자(1988). 저소득층 모자가족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6(3). 5-41.
- 문숙재·정순희 (1995). 소비지출 패턴 차이에 관한 연구 : 서울지역 편모가족과 양부모가족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6(2). 53-65.
- 변화순(1997). 이혼가족을 위한 대책연구. 여성연구. 52. 75-95.
- 성정현(2000). 이혼여성의 자립방안. 협성대협성논총. 12. 77-108.
- 신화용·조병은(1996). 편모가 인지한 자원과 편모의 심리적 적응. 가족학논집. 8. 57-75.
- 옥선화·성미애·허정원(2001).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 여성가장의 생활실태 조사. 대한가정학회지. 39(2). 1-13.
- 이성림·김민정(2001). 여성가구주 가구의 인구학적 동향과 경제적 복지 상태. 소비자학연구. 12(1). 17-30.
- 이윤금·양세정(1999). 양부모가족과 편부모가족의 가계경제구조 비교. 소비자학연구. 10(4). 93-108.
- 이재림·옥선화(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 자녀의 지원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5). 49-63.
- 정영숙·박충선(1998). 편모가족과 편부가족의 빈곤개념 : 상대적 빈곤과 주관적 빈곤의 비교적 접근. 대구대사회과학연구. 5(4). 73-88.
- 정현숙·서동인(1997). 편모가족의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가족자원 및 심리적 적응. 아동학회지. 18(2). 163-176.
- 차성란(1999). 여성가장 실직자 가정의 생활실태 및 복지정책에 대한 요구. 대전대생활과학연구. 5. 137-154.
- 통계청(2002). 2000 인구주택총조사 최종집계결과 (여성, 아동, 고령자, 1인가구부문).
- 홍승아·이미영(1999). 울산시 실직 여성가장의 현황. 울산과학대연구논문집. 32. 175-199.